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105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공직자윤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,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(안 제2조)

나. 민간위원 자격 ‘법관’을 ‘판사·검사·변호사’로 정비(안 제2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8. 5. ~ 8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(2021. 10. 1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명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3명의 위원은 법관”을 “5명의 위원은 판사·검사·변호사”로, “자 중”을 “사람 중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 회” 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5명</u>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 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<u>3명</u>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<u>자</u>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7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5명</u>의 위원은 판사 · 검사 · <u>변호사</u>----- ----- <u>사람</u> 중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### ○ 제2조(구성)

-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2명 증원에 따른 심사수당 발생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

## 4. 작성자 : 감사담당관 강승혁 (☎ 3153-8164)